

의안 번호	2238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검 토 보 고 서</b></p>
----------	------	--

### 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4. 2. 29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4. 2. 29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4. 3. 18.(월)

### 2. 제안이유

- 음악창작소의 대외적 공식 명칭인 울산 음악창작소로 개정하고, 효율적이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상위법을 근거로 위원회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제명 및 조문 내용, 별표·별지 제목 및 내용 중 음악창작소를 울산음악창작소로 수정

(제명, 안 제1조·2조·6조, 별표 1·2, 별지 제1호 ~ 제3호)

- 나. 효율적이고 명확한 업무처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위원장 호선(안 제7조)
- 다.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의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신설(안 제7조)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
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음악창작소의 대외적 공식 명칭인 울산 음악창작소로 개정 및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등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타당하다고 사료됨.

# 큰 거 법 규

## 지방자치법

- 제130조(자문기관의 설치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(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,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, 위원회 등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-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·절차,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·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해서는 아니 되며,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

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80조(자문기관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.